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035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 요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 검토의견	2
1.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대상 가격안정 지원 및 최고가격제 도입 ...	2

I. 개 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삼석의원 등 17인

(2) 제 안 일 : 2026. 4. 1.

(3) 회 부 일 : 2026. 4.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따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가격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어 농림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음.

현행법은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에 대해 세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가 급등에 따른 가격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시행한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바 있으나, 어업용 면세유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농업용·임업용은 적용되더라도 일부 주유소에서는 과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해 농어민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가격 안정 지원 및 최고가격 설정 제도를 도입하고,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단계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22항 등).

II. 검토의견

1.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대상 가격안정 지원 및 최고가격제 도입

현 행	개정안
☐ <신 설>	☐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대상 가격안정 지원 및 최고가격제 도입(제106조의2 제22항부터 제25항까지 신설) ○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시장가격 상승 시 지원 가능 -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 시설농업, 임업, 축산업 및 양식업 등에 사용되는 난방 또는 연료비 지원 - 농림어업 에너지 비용 안정에 필요한 지원 ○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시장가격 상승 시 최고가격제 도입 - (대상) 석유정제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가격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등에게 판매하는 최종 판매가격 ○ 최고가격 실시에 따라 공급가격과 시장가격 간 차액에 대한 손실 보전 ☐ 부칙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면세유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서삼석의원안 2026. 4. 1. 발의(의안번호 18035)

☐ 개정안은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차액 보조, 난방비·연료비 지원 등 농·임·어업 에너지 비용 안정을 위한 지원정책의 근거를 신설하고, 면세유 시장 가격 상승 시 석유정제업자·수입업자가 석유판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가격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등에게 판매하는 가격의 상한을 지정하되 손실 발생 시 이를 보전해주는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동 조항은 1972년 신설된 것으로, 당초 연근해어업용 선박 선박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86년에는 농업용 기계에 대한 면세제도 도입, 1990년부터 농업용을 추가하였으며, 2003년부터 임업용 석유류를 추가하였음. 또한 1999년부터 일몰제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일몰이 연장됨.

한편, 2012년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2012. 1. 2.)으로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공급제도는 3년 단위로 연장하되, 향후 10년간 유지하기로 발표한 바 있음.

2025년 기준 면세유 공급 실적을 살펴보면, 경유가 1,625천kl로 면세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등유 365천kl, 휘발유 187천kl 순을 보이고 있음.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공급량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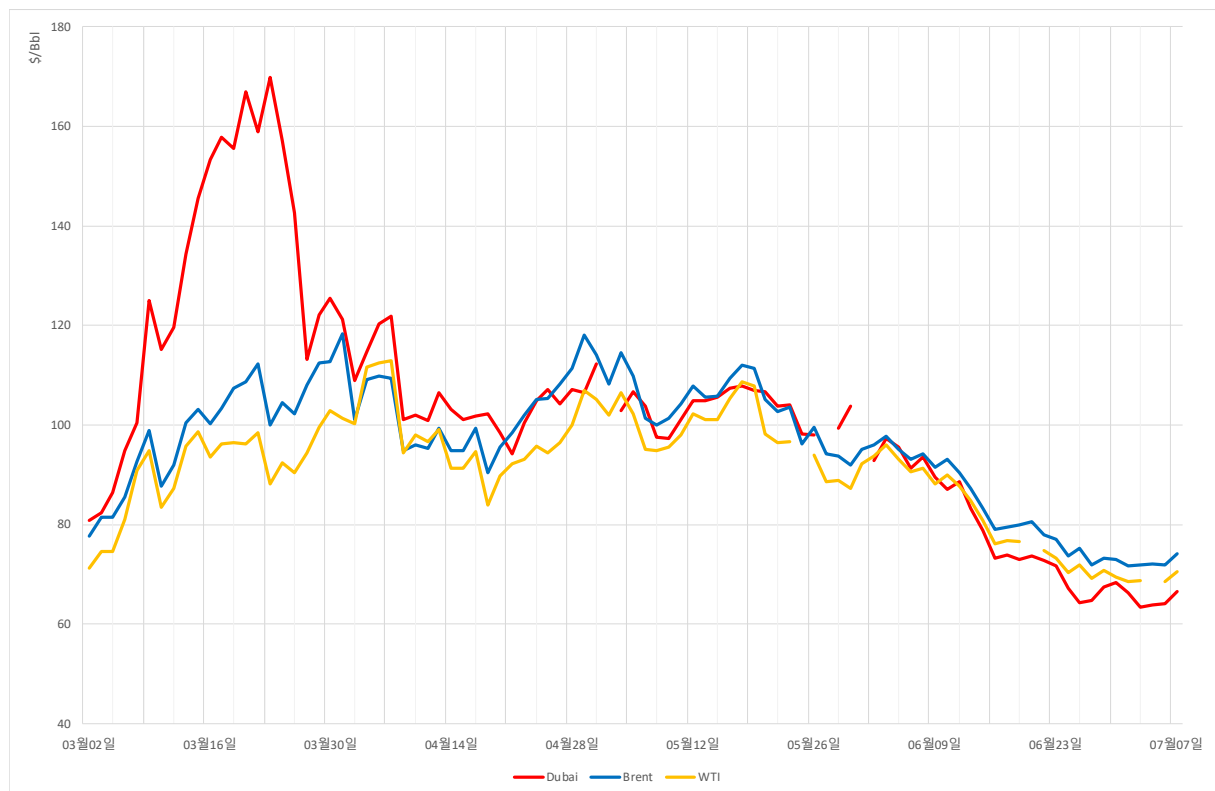
(단위: 천kl)

유종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휘발유	211	202	201	194	189	190	187
경유	1,782	1,855	1,766	1,666	1,662	1,626	1,625
중유	42	44	38	34	20	19	21
윤활유	8.3	8.3	8.1	7.1	7.1	7.2	7.1
LPG	11	15	17	19	18	19	21
등유	446	442	440	422	349	340	365
부생연료유	-	-	-	-	28	26	29
합 계	2,500	2,567	2,472	2,344	2,274	2,228	2,255

자료: 재정경제부

□ 한편, 2026년 2월부터 미국·이스라엘-이란 간 중동전쟁 발발로 원유 해상수출 경로가 차단되고 에너지 생산시설 가동이 중단되면서 국제유가 가격이 급등하였음. 특히 두바이유의 경우 전쟁 직후인 2026년 3월 2일 배럴당 80.79\$에서 2026년 3월 23일 배럴당 169.75\$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110.1% 상승한 수치임.

[중동전쟁 이후 국제 원유가격 추이]



자료: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http://opinet.co.kr>)

□ 국제 유가의 급등과 원유 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석유 및 부탄 가격 역시 급격하게 상승하였음. 정유사 판매가격(세전)을 기준으로 2026년 2월 보통 휘발유는 평균 728.31원/ℓ이었으나 2026년 5월 평균 1,122.74원/ℓ (+54.1%), 자동차용 경유는 2월

평균 888.96원/ℓ 에서 5월 평균 1351.71원/ℓ (+52.1%), 부탄의 경우 2월 927.19원/kg에서 5월 1,126.15원/kg(21.4%) 증가하였음.

[국내 정유사의 제품별 월간판매가격(세전) 추이]

(단위: 원/ℓ, 원/kg)

구 분	고급휘발유	보통 휘발유	자동차용 경유	선박용 경유	부탄
2026년 2월	884.74	728.31	888.96	783.61	927.19
2026년 3월	1,104.27	915.30	1,143.45	878.76	951.12
2026년 4월	1,395.43	1,113.29	1,345.14	1,454.57	995.67
2026년 5월	1,418.02	1,122.74	1,351.71	1,397.82	1,126.15
(2월 대비)	60.3%	54.2%	52.1%	78.4%	21.5%

자료: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이에 정부는 3월 13일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였음.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¹⁾에 따라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가격의 상한을 정하는 방식으로 도매가를 규제하여 국내 석유제품 및 전반적인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되, 최고가격 적용으로 인해 정유사가 입는 영업손실은 회계 검증을 거쳐 정부 재정으로 손실을 사후 보전할 예정임.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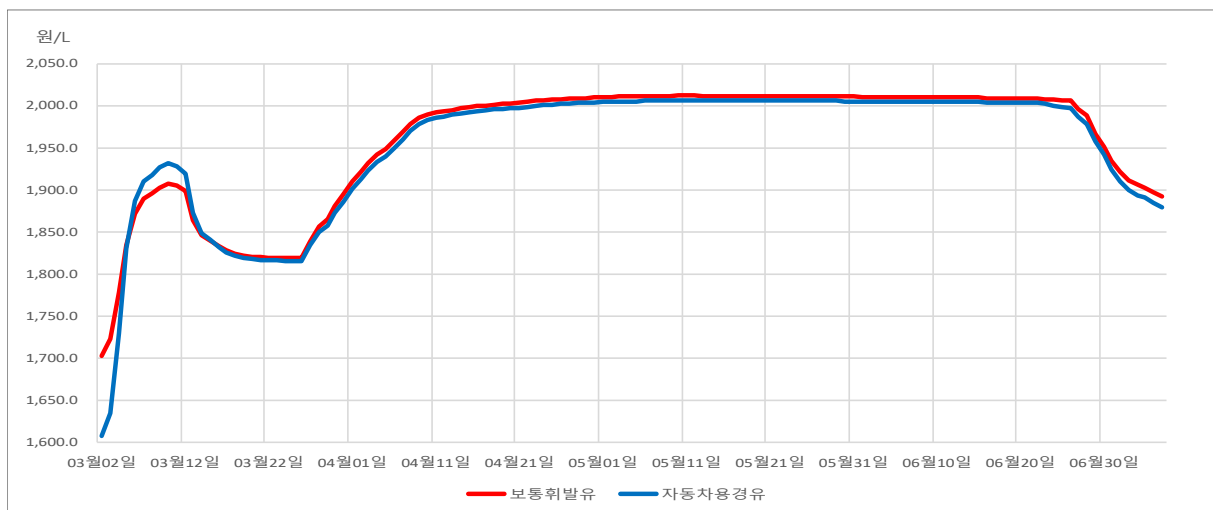
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석유제품의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지정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최고가가격제는 총 7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2026년 7월 현재 최고가격은 보통 휘발유 1,784원/ℓ, 자동차용 경유 1,773원/ℓ, 등유 1,380원/ℓ 임.

[국내 주유소 휘발유 및 경유 판매가격 추이(2026년 3월~7월)]



자료: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추이]

(단위: 원/ℓ)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시행일자		2026.3.13.	2026.3.27.	2026.4.10.	2026.4.24.	2026.5.8.	2026.5.22.	2026.6.27.
공급가격 상한	휘발유	1,724	1,934	1,934	1,934	1,934	1,934	1,784
	경유	1,713	1,923	1,923	1,923	1,923	1,923	1,773
	등유	1,320	1,530	1,530	1,530	1,530	1,530	1,380

자료: 산업통상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어업용 면세유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농업용·임업용 면세유는 적용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일부 주유소에서는 추가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유가 상승에 따른 농어

민의 경영 악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개정안은 농·임·어업인의 유류비 경감을 위한 지원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영농·영어 생산비를 빠르게 낮춰 농수산물 물가 상승 압력을 억제함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조세특례제한법」의 목적은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세의 감면·중과 등 조세 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인바, 농·임·어업인의 지원 정책 및 면세유 최고가격 지정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음.

또한, 석유에 대한 최고가격제 및 손실보전은 이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농·임·어업인에 대한 지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각종 농·임·어업 관련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음.

둘째,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면세유 가격 급등에 따른 농·어업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유 보조금 지원 등 관련 재정정책이 이미 시행 중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농기계 3종 면세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528억 8,300만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93억 9,000만원),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561억 9,9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을 경우 초
과분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147